#### [서식 예] 계약금반환청구의 소(계약목적달성불능으로 계약해제)

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계약금반환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 ○ ○ ○ □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○ 시 ○ 동 ○ 번지 대지 100평을 대금 50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,000,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- 2. 원고는 위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한 것이었으나, 위 대지의 일부가 ○○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의 도로용지에 해당하여 조만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면 위 대지의 서쪽 약 1/3 가량의 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어 공장을 건축할 수도 없고 또한 건

축허가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- 3.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체결 전에 피고의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을 명한 무막하였으며,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고, 원고는 위 대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면 위 대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〇〇. 〇. 〇〇.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매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교부한 계약금 5,00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.
- 4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〇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1. 갑 제5호증

매매계약서

계약금 영수증

토지대장등본

도시계획사실확인원

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원고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, <sup>™</sup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,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. 매매대상 토지 중 20~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,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%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,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다12259 판결).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